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군사교육단), 02-970-9274

제정 2018. 06. 11. 개정 2021. 10. 21.

제 1 장 총 칙

- 제1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이하 "본교"라 한다) 제53조의2에서 위임된 학군단 운영 및 본교 소속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 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본교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총장책임하에 운용한다.
- 제3조(직제편성) 학군단은 총장 직속으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 장병)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운용한다.
-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 3.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 4.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 5. 그 밖에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5조(학생군사교육요원) ① 제3조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 1.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 한 총장의 지휘(교내교육 편성 등 대학 학사 관련 사항)를 받음과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학군사관후보생 교과목, 훈육 등)을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 2.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 3. 본교에서 임용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은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의 자격 및 선발 방법, 채용조건은 각 군 참모총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예비역 교관 및 학군단 행정실장의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임무를 수행한다.
 - 가. 학군단장이 지정하는 군사학 과목 교육
 - 나. 후보생 훈육지도 및 관리
 - 다. 학군사관 후보생 /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 및 선발 관련행정업무
 - 라. 동·하계 입영훈련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파견되어, 군사학 교육에 관련된 업무 (육군 학군단)
 - 마. 기타 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수행
- 2. 육군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입영훈련 간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파견명령에

- 의해 파견되어,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지휘통제하에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파견기간 동안 급여 및 파견비는 본교에서 지급한다.
- 3.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 1회(11월 정기평가) 학군단장이 실시하고, 육군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에 대한 동·하계입영훈련 파견간 평가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평가하여 본교에 통보하며, 평가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참고한다. 또한 재계약 3개월 이전 학군단장이 예비역 관 및 행정실장에 대한 재임용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교의 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 4. 학군단장은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교내교육, 입영훈련 등)
 -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다.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이 부족할 경우
 - 라.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시
- 5.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해임사유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5조 3항을 준용한다.
- 6.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며, 동시에 육군학생군사학교 및 공군교육사령부에 제출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총장에게 후임자를 선발·추천한다.
- 7. 그 밖의 인사관리는 본교 교원인사 규정 및 대학회계 연봉제 직원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내교육은 본교와 육군학생군사학교 및 공군교육사령부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고, 입영교육은 육군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공군은 공군교육사령관이주관하여 실시하다.

- ② 교내에서 실시하는 군사학교육은 국방부 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총장이 임용한 예비역 교관이 담당한다.
- ③ 학군단의 근무시간은 각 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 교원인사 규정 및 대학회계 연봉제 직원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본교 학칙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 육요원과 본교에서 임용한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육군은 주 4시간 이상, 공군은 주 6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체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사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학군사관 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본교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조기졸업에 따른 미 이수 군사학교육을 이수 할 경우
 - 2. 졸업을 하였지만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유급된 군사학과목에 대해 이수 할 경우
- 제8조(입영교육) ① 학군사관 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에서 공군은 공군 군부대에 위탁하여 입영훈련을 각각 받게 한다.
-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장, 공군은 공군교육사령관의 통제와 지침을 각각 준수하며, 본교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 4 장 우수인력 획득 지원

- 제9조(홍보업무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지급 대상자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 제10조(우수인력 획득 지원) 총장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 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
 -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3. 학군사관 후보생에 대한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1. 교보재 창고
 -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 장비와 보조재료
 - 4.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 6.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 7.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등의 사항
- 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 1. 학군사관 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전사적지 탐방, 복지비, 자치 활동비 등)
 - 2. 학군사관 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3.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제 6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 제13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처장급 이상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 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학군단장(육군·공군)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필요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군단 예비역 교관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14조(심의사항)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 예산 관련 사항
-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국방부에서 추천한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임용, 해임관련 심의
- 4. 본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 5. 그 밖에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를 반기 단위(6개월)로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 2, 제11조의 3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66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보상)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및 공상 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 제18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병역법」제75조 제 4, 5항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치료비용에 대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신청한다.
- 제19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 ② 제①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 8 장 육군 예비역 교관(군 교수) 및 행정실장 복장

제20조(예비역 교관의 복장) 교내 교육 및 입영훈련간 예비역 교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 복장통제 지침을 따른다.

- 1.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착용한다. 다만 현역과 예비역 구분을 위해 예비군 흉장을 패용하다.
- 2. 전투복 착용시 두발은 "간부 표준형" 조발 기준을 적용한다.
- 3. 전투복 착용시 교관모를 착용한다.
- 제21조(행정실장의 복장) 행정실장은 입영훈련간 육군학생군사학교 복장통제 지침을 따른다.
 - 1. 훈련간 상의는 훈련기간 중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통제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 2. 하의는 검정계통, 신발은 검정계통 운동화 및 등산화를 착용한다.
 - 3.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목걸이형 명찰을 착용한다.

부칙(제439호, 2018.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8호, 2021, 10,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